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감사실

우 수 사 례

제 목 : 부서운영비 사용내역 공개

소관부서 : 지능정보·융합기획팀, IoT산업진흥팀, 기획예산팀

내 용

우리원 법인카드사용지침 제16조~제18조에 근거하여 직위별 지급기준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운영·지급하고 있다. 사용자는 해당월 사용증빙을 익월 5일까지 관리부서(총무정보팀)에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부서에서는 사용 범위, 용도, 사용제한 위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산 및 환수를 하고 있다. 그러나,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 대상, 공개 범위, 공개 시기 등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.

그러나, 지능정보·융합기획팀 변00 팀장과 IoT산업진흥팀 이00 팀장, 기획예산팀 원00 팀장의 경우, 매월 부서운영비 사용내역 전체¹⁾를 소속 팀원에게 매월 공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

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²⁾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부서장의 부서운영비 사용내역을 소속 팀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조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.

1) 법인카드사용지침 <별표 제5호> 부서운영비 집행세부내역

2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항 5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